

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 정오표

기준 판권 : 2021년 8월 17일 초판 발행

세부 위치		수정 전	수정 후	수정일	비 고
본문 4쪽	1.1.2 지하안전점검 (중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즉시 지하안전정보시스템(JIS)에 보고서를 등록하도록 한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<u>지하안전정보시스템 (www.jis.go.kr, 이하 “JIS”라 한다.)을 통하여</u>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출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</u> 	2021.09.02	내용 수정
본문 5쪽	[그림 1.2] 지하안전점검 절차도 (하단)			2021.09.02	그림 수정